

# 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06,390,367	9,191,711
일반회계	256,776,535	7,703,296
특별회계	49,613,832	1,488,415
공기업특별회계	32,258,983	967,76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517,864	525,53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741,119	442,234
기타특별회계	17,354,849	520,64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60,954	40,829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특별회계	151,000	4,53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997,797	29,934
공업단지특별회계	32,852	986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787	32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25,286	759
동두천시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임시특별회	4,656,781	139,703
기반시설특별회계	42,822	1,28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0,076,570	302,297

제 2 조 세입 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236,276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6,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8 조 2014년 제3회 추가경정(최종)예산 성립 후 교부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한다.